

보상처 청렴교육



청탁금지법·행동강령 이해/청렴도 향상전략

2019. 5. 30.



정세윤(a2163@naver.co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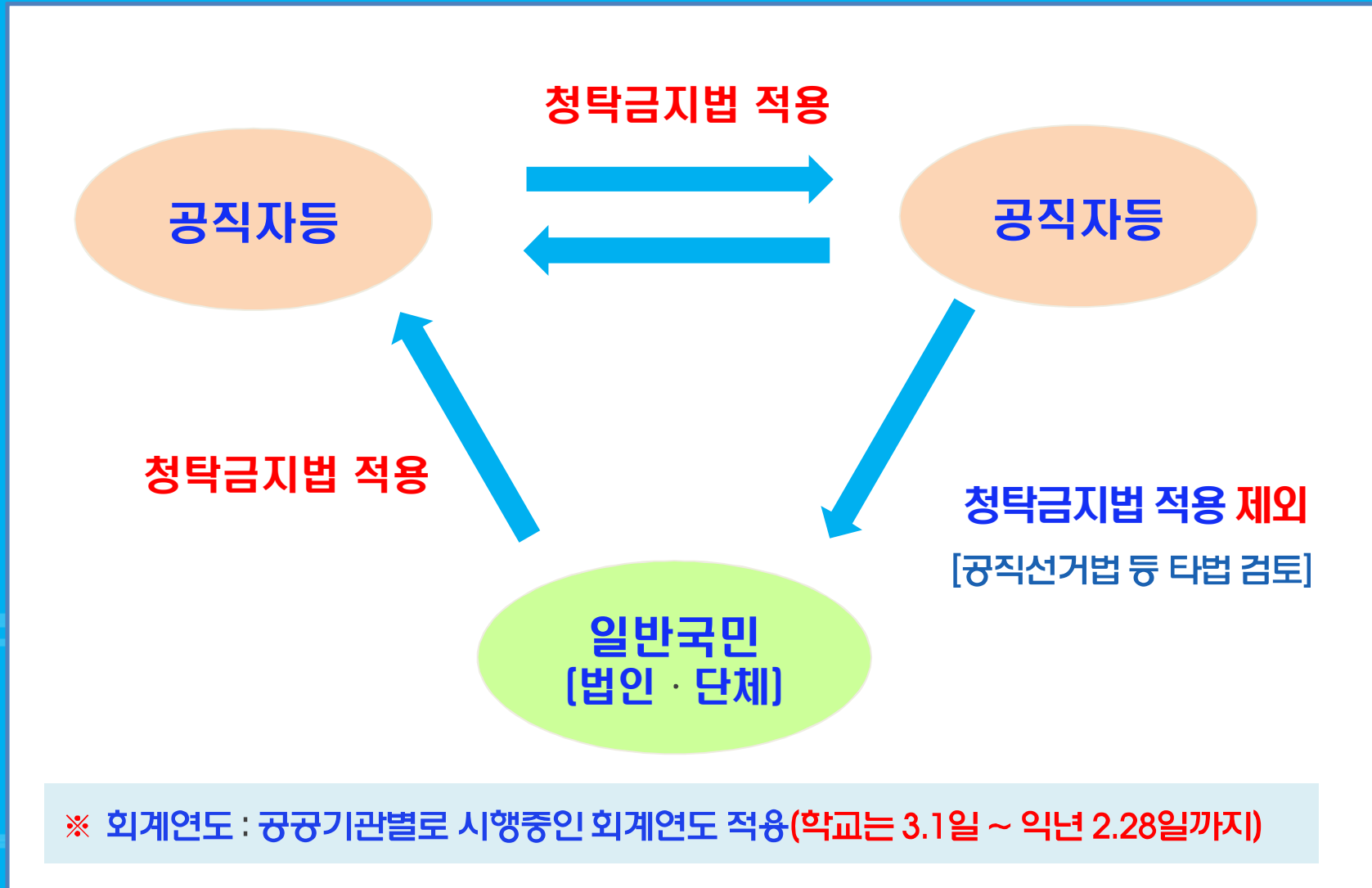
Contents

- I. 국가청렴정책 기초
- II. 청탁금지법 이해
- III. 임직원 행동강령
- IV. 부패/공익신고
- V. 청렴도 향상전략
- VI. 맺는 말



II. 청탁금지법 이해

청탁금지법 기본 원리



II. 청탁금지법 이해

적용 대상

공공기관	적용대상 O	적용대상 X
행정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기제 공무원 • 공중보건의사,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간제 근로자 • 무기계약직 근로자
공직유관 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간제,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역업체 직원
언론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턴기자 등 단시간근로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로그램 외주제작사
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동부 감독, 코치 • 총장, 학장, 교수 등 교원 • 기간제 교사, 유치원 교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과후교사 • 겸임교원, 명예교수
공무수행 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령상 위원회의 민간위원(도시계획위원회 등) • 법령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 받은 자(감정평가협회 등) •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자(건축물 경관심의 등) •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(민간협회 직원 등) <p>* 학교 및 유치원의 학교운영위(O), 학교폭력대책위(O), 학부모회(X)</p>	

II. 청탁금지법 이해

대상 직무(14개)

청탁자: 과태료, 담당자: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1 인가·허가 등 처리

3 채용·승진 등 인사 개입

5 공공기관 주관 수상, 포상 등
선정·탈락에 개입

7 계약 당사자 선정·탈락에 개입

9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
재화·용역의 사용·수익·점유 등

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

13 행정지도·단속·감사 결과 조작·묵인 등

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

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
선정·탈락에 개입

6 입찰·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

8 보조금 등의 배정·지원 등에 개입

10 입학·성적 등 업무 처리·조작

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
각종 평가·판정 결과 조작 등

14 사건의 수사·재판 등 업무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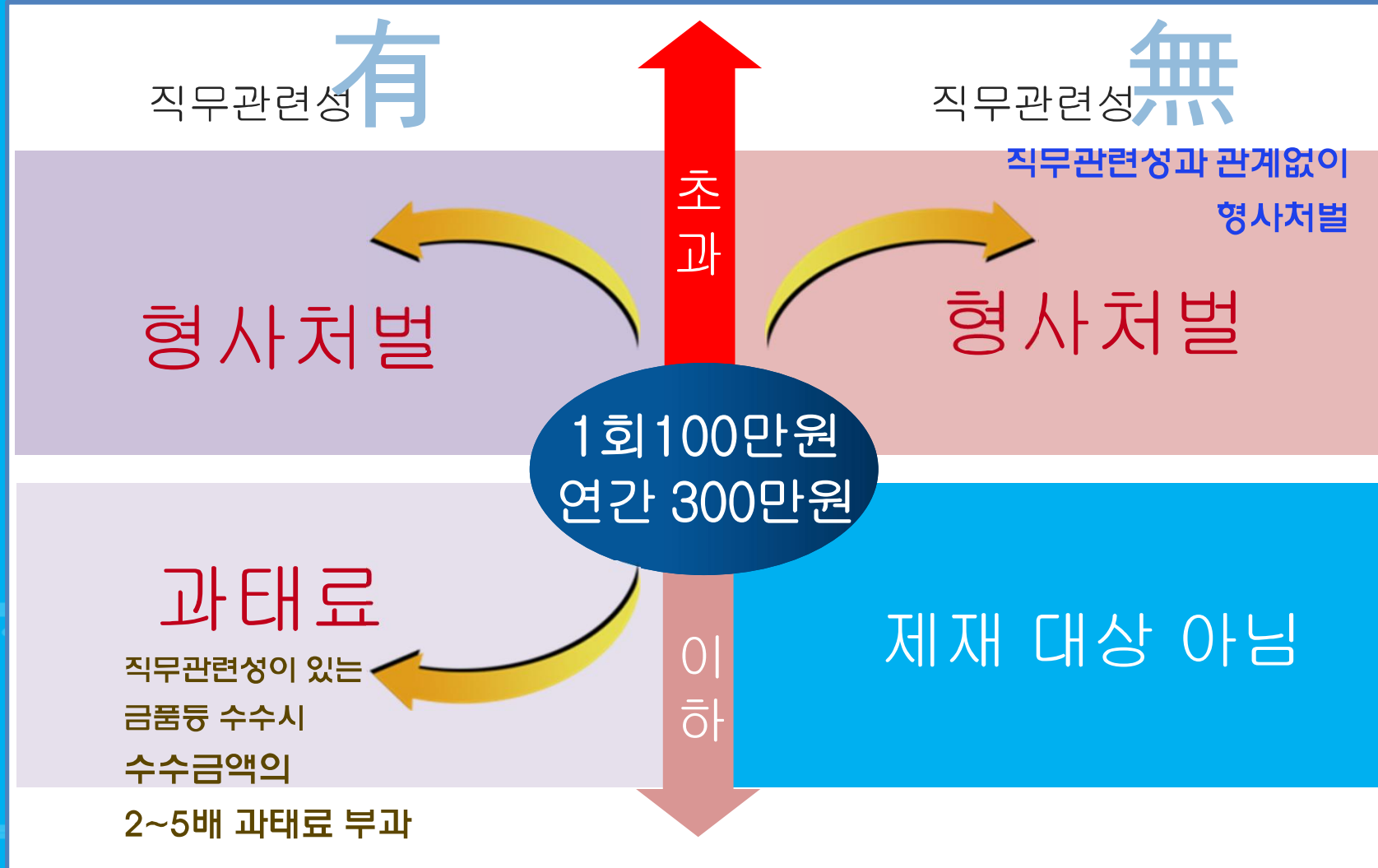
예외사유(7가지)

- ① 법령·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
-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
- ③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
- ④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
- ⑤ 직무·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
- ⑥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·해석 요구
- ⑦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

II. 청탁금지법 이해

제재대상 수수금지 금품 등

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

예외적 허용 금품등(8가지)

<p>1</p> <p>공공기관이 소속·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등이 위로·격려· 포상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</p> <p>※ 직무상 명령·복종 관계에 있는 동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 만 성립</p>	<p>2</p> <p>원활한직무수행사교·의례,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수물·경조사비·선물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</p> <p>※ 가액범위내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시 뇌물죄 성립</p>	<p>3</p> <p>사적 거래(중여는 제외)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(權原)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</p> <p>※ 무이자 소비대차는 정당한 권원 부정(사실상 위장중여 등)</p>	<p>4</p> <p>공직자등의 친족(민법 제777조)이 제공하는 금품등</p> <p>※ 친족범위 : 8촌이내 혈족, 4촌이내 인척, 배우자</p>
<p>5</p> <p>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 이 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 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</p> <p>※ 직원상조회, 동호회, 사회단체 에서 정한 기준범위내는 허용</p>	<p>6</p> <p>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범위 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등</p> <p>※ 공식적 행사, 통상적 범위내, 일률적 제공 등 3원칙은 허용</p>	<p>7</p> <p>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 용품등이나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</p> <p>※ 기관로고, 명칭표시 유무, 제작 목적,가액,수량등 종합적 판단, 사회통념에비추어 기념품·홍보 용품으로 인정할수 있는가액</p>	<p>8</p> <p>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</p> <p>※ 금품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 내부규정 (예규, 규칙, 훈령, 통첩, 지침, 규정, 사규, 기준, 정관 등)에서 허용하는 금품등</p>

II. 청탁금지법 이해

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[2018.1.17부터 시행]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음식 	○ 3만원 한도	○ 3만원 한도
선물 	○ 5만원 한도	○ 5만원 한도 (단,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 한도) * 일반선물 5만원 + 농수산물 5만원 (○) 일반선물 3만원 + 농수산물 7만원(○) 일반선물 7만원 + 농수산물 3만원(X)
축.조의금 	○ 10만원 한도	○ 5만원 한도(조화, 화환 포함 10만원) * 조의금 5만원 + 화환 5만원 (○) 조의금 3만원 + 화환 7만원(○) 조의금 7만원 + 화환 3만원(X)


※ 농수산물 예시

- . 갈치, 대하, 간고등어, 굴비, 옥돔, 멸치, 건미역, 마른김 등
- . 한우, 돼지고기, 오리고기, 닭고기, 사골 등
- . 과일, 꽃감, 수삼, 녹차, 꿀, 화환등(단순 염장·건조, 절단·포장포함)

※ 농수산물 가공품 예시

- . 조미김, 어묵, 생선통조림, 젓갈, 간장게장, 햄, 불고기, 떡갈비, 훈제오리 등
- . 고춧가루, 곡물, 버섯분말 등
- . 참기름, 볶음고추장, 과일잼, 흑마늘, 홍상등(원료 50% 초과)

II. 청탁금지법 이해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상품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※ 예외적으로 제공가능한 경우 예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시민 등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.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 상품권 .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가 위로, 격려,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 . 다른 법령,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
외부 강의 등 상 한 액	공무원 공직유 관단체 임직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급별 구분 없음 (시간당 20~50만원+1시간 초과시 50% 할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급별 구분 없음 (시간당 40만원 +1시간 초과시 50% 할증)
	국.공립 학교 교직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무원과 동일 (시간당 20~50만원+1시간 초과시 50% 할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(시간당 100만원)
	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임직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(시간당 20~40만원+1시간 초과시 50% 할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(시간당 100만원)

공직자들의 대응방법

부정청탁을
받았다면?

거절의사
명확히 표시

동일한 부정청탁을
다시 받은 경우
소속기관장에게
서면으로 신고

금품등을
받았다면?

지체 없이
거절·반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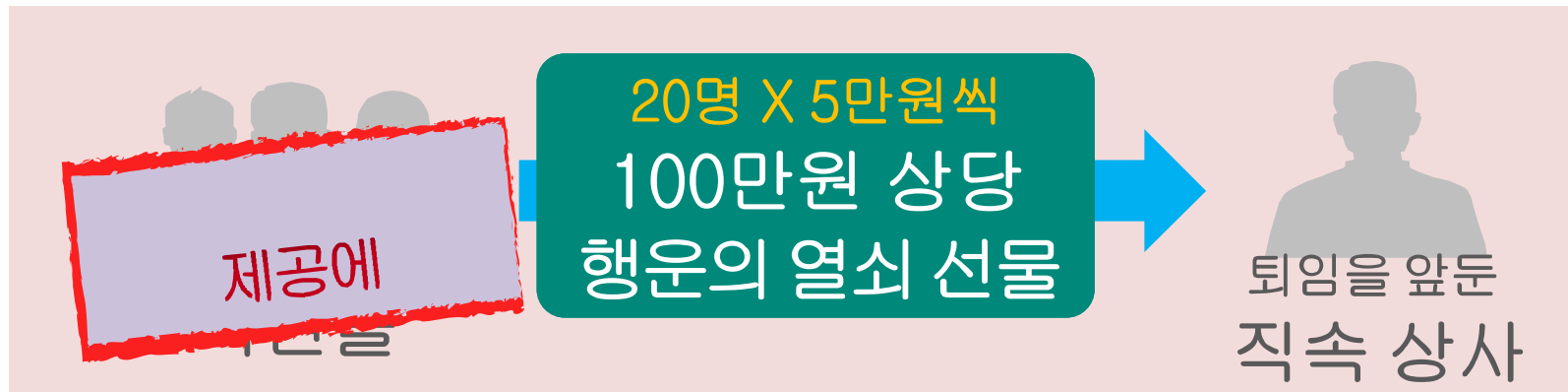
지체 없이
소속기관장에게
서면으로 신고

초과사례금을
받았다면?

지체 없이
반환

2일 이내
소속기관장에게
서면으로 신고

퇴직예정자 전별금(선물)



여러 사람이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선물을 주면
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각자 합산액 기준 처벌

❖ 형법 제30조(공동정범)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(다수인의 질서 위반행위 가담)

※ 국립대학교 퇴임예정 교수 퇴임선물(후배교수 17명이 77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 제공)
-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위반, 검찰에서 16명에게 기소유예 처분, 1명 기소중지 처분)

Ⅲ. 임직원 행동강령 [변경/추가]

① 2018.11.8부터 변경 · 시행 사항

사례	제재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(제11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직원의 가족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○ 임직원의 가족등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직자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소유 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/100 이상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30/100 이상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/100 이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(11조의 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해충돌 유발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 · 조언 · 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, 법인 등의 대리, 다른 직위에서의 취임 등 금지

Ⅲ. 임직원 행동강령(변경/추가)

사례	제재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족 채용 제한 (제11조의 6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원, 인사업무 담당자, 자회사등 지휘·감독·규제·지원담당 직원은 가족을 소속 및 자회사 등에 채용영향력 행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의계약 체결 제한(제11조의7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원, 계약업무 담당자, 자회사등 지휘·감독·규제·지원 담당 직원은 소속 및 자회사등과 수의계약 체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신고(서면) (제11조의 8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공사의 퇴직자(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자)와 골프, 여행,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*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직자 자녀 결혼 등 경조사, 돌잔치, 환갑,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, 친목모임,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, 공청회,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, 타기관 주관 공식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

Ⅲ. 임직원 행동강령(변경/추가)

사례	제재내용
<p>○ 알선·청탁 등의 금지 (제10조)</p>	<p>○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·청탁 금지</p> <p>○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 금지</p> <p>○ 자신의 직무권한 행사 또는 영향력 행사로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·청탁하는 행위(8개 사항)</p> <p>*후원·협찬요구, 임용·승진전보등인사개입, 업무상비밀누설요구, 계약당사자 선정개입, 재화·용역을 정상적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개인·단체·법인에게 매각·사용토록 하는 행위, 입학·성적·평가개입, 수상·포상 등에 개입, 감사·조사등에개입등</p>
<p>○ 사적 노무 요구 금지 (제15조의 2)</p>	<p>○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직위·직책등에서유래되는 영향력 행사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·약속하는 행위</p> <p>*단,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</p>

Ⅲ. 임직원 행동강령(변경/추가)

사례	제재내용
<p>○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(제19조)</p>	<p>○ 자신,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금전차용, 물품 등 계약 체결, 부동산 등 거래 시 사전 신고</p> <p>* 다만,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제외</p> <p>*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거래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신고</p>
<p>○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(제11조의 5)</p>	<p>○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임직원의 영리행위 금지</p> <p>*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노무 또는 조언·자문 제공, 대가수수 행위</p> <p>* 소속기관이 쟁송당사자인 경우 또는 소속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와 관련, 상대방 대리 또는 조언·자문, 정보 제공행위</p> <p>* 외국 정부·기관·법인·단체 등 대리행위(사장 허가시 가능)</p> <p>* 직무관련 다른 직위에 취임 행위(사장 허가시 가능)</p> <p>○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사장의 중지·종료 조치</p>

Ⅲ. 임직원 행동강령(변경/추가)

사례	제재내용
<p>○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 (제11조)</p>	<p>○ 직무수행 관련 이해충돌 우려사항(7가지) 구체화 및 신고 의무 부여</p> <p>① 임직원 자신 ②4촌 이내 친족 ③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·단체 ④임직원 자신·가족이 재직하는 법인·단체 ⑤임직원 자신·가족이 대리하거나 조언·자문 등을 제공하는 자(단체에 소속된 경우 포함) ⑥임직원 자신·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·지분 등을 가지는 법인·단체(이하 특수관계 사업자) ⑦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자기 직무관련자인 경우</p> <p>*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촌동생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심의한 사례</p> <p>* 대형 건설공사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재직중인 회사에 최고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로 선정된 사례</p>

Ⅲ. 임직원 행동강령(변경/추가)

② 향후, 개정 예정 [공무원 행동강령 2018.12.24일 공포 · 시행]

사례	제재내용
<p>○ 갑질 금지 (제13조의3)</p>	<p>○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·허가 등 담당 직원이 민원인에게 부당 접수지연, 거부 등 -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직무관련 없거나,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·요구 - 기관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직무관련자에게 기관의 의무·부담 이행을 부당 전가, 처리 지연 행위 -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대해 업무 부당전가, 비용·인력 부당 전가 -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 직원, 소속기관의 권리·권한을 부당 제한, 요구하는 행위
<p>○ 해외출장 등 부당지원 금지 (제14조의2)</p>	<p>○ 감독기관의 부당 해외출장 등 지원 요구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 출장·행사·연수 등과 관련, 법령근거 부재, 예산의 목적·용도 불 부합 금품 등의 제공 요구 등 - 법령 근거 무, 목적·용도 불 부합 해외출장 예산지원 요구, 정상적 관행에서 벗어난 예우 또는 의전 요구 등 -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감독기관장에게 통보, 징계 등 필요조치

IV. 부패 · 공익신고

권익위에서 처리하는 신고 대상



부패 행위

1. 공직자(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 임직원 포함)가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
2. 예산집행·재산관리·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3.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·권고·유인하는 행위



공익침해 행위

1.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
2. 불량식품 제조·유통, 폐기를 불법 매립, 유사 석유 판매, 의약품 리베이트, 가격달합 행위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279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



행동강령 위반행위

1.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위반한 행위
2. 직무 관련 금품수수, 이권개입, 부정한 알선·청탁, 공용물의 사적 이용 등



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

1. 연구개발비 R&D 및 출연금

- 연구과제와 무관한 원부자재 구입
- 연구원 허위 등재, 인건비 입금 후 타 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
- 연구비 사적용도 사용, 허위청구, 비용 부풀리기, 중병 위조 등

2. 복지사업 보조금

- 사회복지 시설·단체 친인척 허위 등재, 무자격자 채용, 허위서류 작성 등
- 사회적 기업 서류 조작, 기존 근로자 신규 채용 둔갑, 목적 외 사용 등
- 요양 급여 등 비의료인 고용, 의사부면허자 개업(사무장 병원) 허위서류
- 기타 어린이집 등 지원금, 실업급여, 기초생활급여 등 부정수급

3.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

- 보조금 선정 단계 절차 미흡, 유사/중복 사업 선정
- 목적 외 사용, 사업비 부풀리기, 세급 계산서 위/변조 등
- 보조금 정산 지연, 보조금시설 무단 거래 등

신고대상 및 신고방법

신고자



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

누구든지

(내·외국인 불문, 피해자, 목격자
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)

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

신고자 성실의무

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

신고방법

신고내용

- 인적사항
- 기명의 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
- 부패행위 증거 (증거제시 의무)

구술신고 예외 인정 운영지침 제3조 제2항

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인정

기타 신고 방법

- 방문
- 우편
- 팩스_044-200-7972,
- 출장
- 부패공익신고앱, 청렴신문고_1398.acrc.go.kr
- 국민신문고_epeople.go.kr

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: 누구든지 다음각호의 자에게 신고

- 공익침해행위 기관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- 공익침해행위 기관의 조사기관 및 감독기관
- 수사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
- 국회의원 등

일반
국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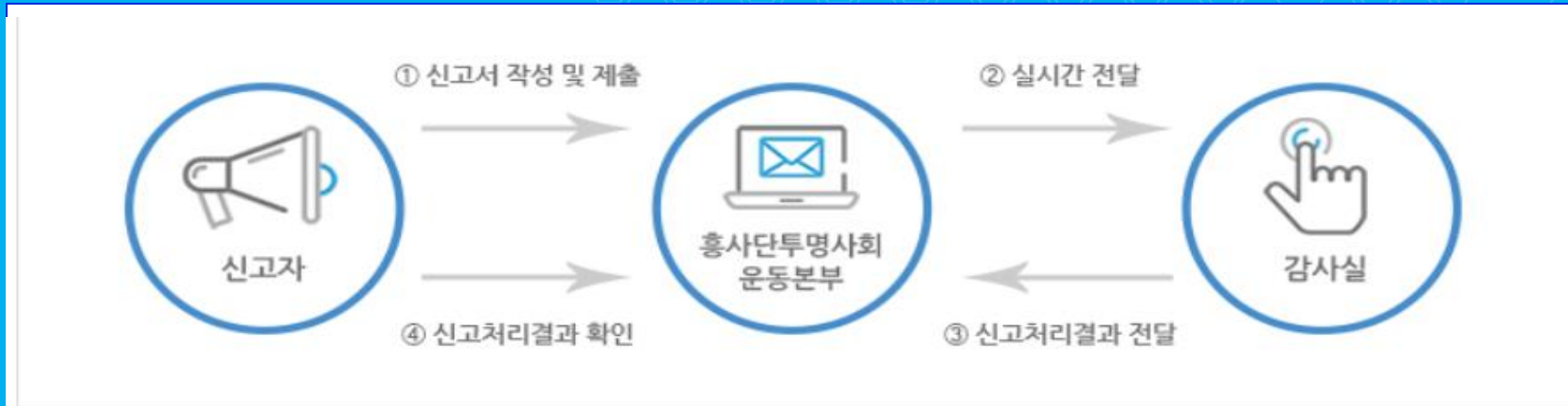
국민권익위원회

공직자

수사기관·감사원
국민권익위원회

IV. 부패 · 공익신고

SH공사 내부공익신고 체계



SH공사 기관번호 : 160005

SH공사 신고대상

- ☑ 부패방지권익위법의 “부패행위”
 - ☑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“공익침해행위”
 - ☑ 청탁금지법의 “위반행위” (임직원행동강령 “위반행위” 포함)
-
-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- 임직원 등이 재산의 취득 · 관리 · 처분,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-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, 예산의 목적 외 사용, 공용물의 사적사용 등
 -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부정청탁 행위 등
 -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, 업무추진비, 여비 등 위법 · 부당한 집행
 - 기타 공사 임직원의 비위 행위
 - 위와 같은 행위의 은폐를 강요 · 권고 · 제의 · 유인하는 행위

신고자 보호체계

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

-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처리과정까지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구축

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보장

- 신고준비단계에서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, 법에서 보호하는 신고인 경우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

신변보호 요청

- 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생명·신체의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

그 밖의 보호조치

- 신고로 인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

✓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신고자 보상 · 포상금 상한액

보상금

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

대상가액의 4~3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

2018년 현재 최고 보상액 11억6백여만원
(국고환수 263억원)



공공기관의 수입
회복증대와 비용 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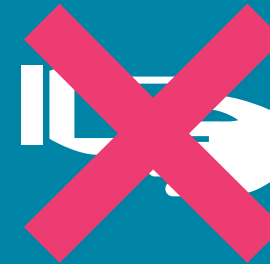


신고자의 손해를 보전
신고 활성화에 도움

포상금

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
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

최고 2억원까지 지급
※ 급품수수 자진 신고 시 최고 5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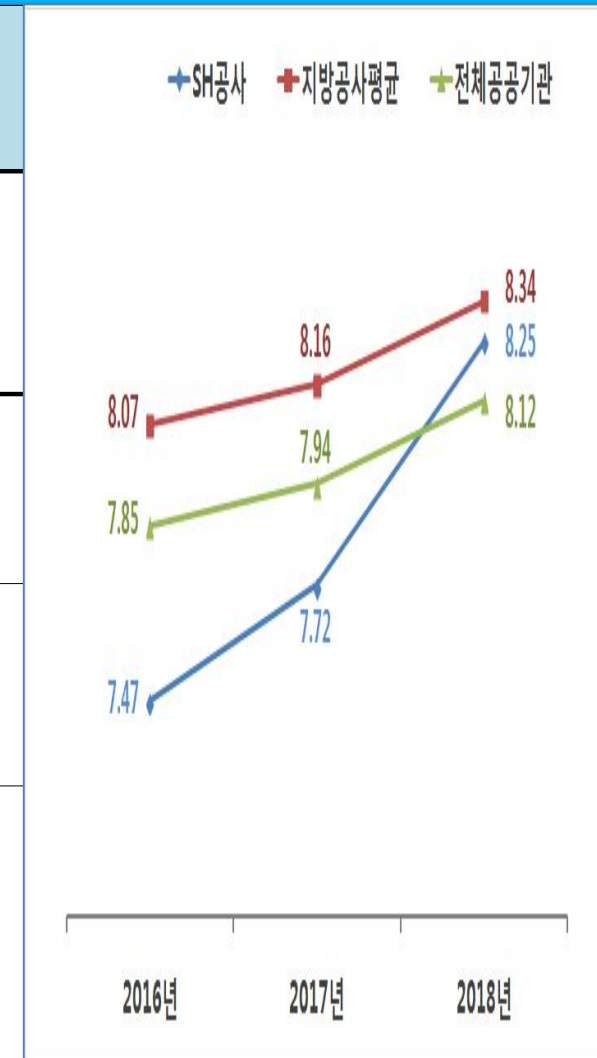


부패예방 및
부패척결에 기여

V. 청렴도 향상전략

SH공사 청렴도 변화 추이(3등급/보통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
종합 청렴도	7.47점 (매우미흡)	7.72점 (매우미흡)	8.25점 (보통)	
평가분야별	외부 청렴도	7.34 (매우미흡)	7.71 (매우미흡)	8.35 (미흡)
	내부 청렴도	7.97 (보통)	8.02 (보통)	7.92 (보통)
	감점	△0.02 (신뢰도 저해)	△0.26 (외부부패)	△0.00 (부패 zero)



V. 청렴도 향상전략

금품 · 향응 · 편의 수수[추정]

구분		금품제공	향응제공	편의제공
외부 청렴 도	제공자 수	없음	1명	없음
	제공회수	없음	1회	없음
	총 제공규모	없음	2.5만원	-
	제공시기 (복수응답)	업무처리 중 100%		
	제공이유 (복수응답)	관행/인사차/친분유지 100%		
내부 청렴 도	인사업무	금품/향응/편의제공 경험 없음		
	업무추진비 · 운영비 · 여비 · 수당	부당집행 경험 : 4명, 51회, 1,252만원 정도 * 관행 50%, 상급자지시 50%, 윤리의식 50%, 외부 압력/청탁 25%		
	사업비	부당집행 경험 없음		
	위법 · 부당 업무지시	5명, 15회		

V. 청렴도 향상전략

외부청렴도(4등급/미흡)

구 분	SH공사 전체	토지 등 보상	임대주택공급관리	계약 및 관리
외부청렴도	8.35	7.25	9.03	9.49
1)부패경험	8.70	7.00 향응수수	10.0	10.0
2)부패인식	8.19	7.50	8.09	8.99
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	8.69	8.59	8.41	9.07
연고관계 업무처리	8.20	7.95	7.63	9.02
업무처리 시 갑질 관행	8.37	7.37	8.56	9.18
부정청탁 업무처리	8.65	8.46	8.14	9.35
업무처리 기준.절차 공개성	7.48	6.28	7.65	8.49
업무처리 책임성	7.59	6.03	8.05	8.69

내부청렴도(3등급/보통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
내부청렴도	7.97	8.02	7.92
1) 청렴문화지수	8.22	8.29	7.70
① 조직문화(업무투명성, 연고관계 등)	8.51	8.47	8.04
② 부패방지 제도	7.72	7.97	7.12
부패신고자 보호실효성	7.28	7.21	6.42
징계·처벌 적절성	7.73	8.19	7.33
부패통제시스템 효용성	8.18	8.51	7.62
2) 업무청렴지수	7.78	7.81	8.08
① 인사업무	8.45	8.21	8.74
가. 직접경험(금품/향응/편의)	10.0	10.0	9.23
경험빈도	10.0	10.0	10.0
경험규모	10.0	10.0	10.0
경험률	10.0	10.0	10.0
다. 인식(제공 영향)	7.66	7.88	7.47
② 예산집행(업추비, 운영비/여비, 사업비)	7.33	7.96	7.81
③ 업무지시 공정성	7.26	6.91	7.36
가. 경험(부당지시 빈도, 경험률)	8.07	7.45	7.14
나. 인식(복지부동, 부당지시, 불이익)	7.50	7.50	7.74
3) 감점	△0.00	△0.00	△0.00

청렴도가 낮은 원인 (추정)





V. 청렴도 향상전략



청렴의 현대적 의미

❖ 적발·처벌 등 부패 사후통제(negative)에서 부패예방을 위한 청렴성제고(positive)로 변화

전통적 부패

- 뇌물 수수
- 횡령·배임
- 예산 낭비

※ 공무원은 7.7%만 부패인식

- 글로벌 스탠더드
- 국민 기대수준 상승

현대사회 부패

- 뇌물·향응수수
- 횡령·배임
- 예산 낭비
- 도덕적 해이(막말 성추행, 음주운전 등)

- 연고·온정
- 알선·청탁
- 이권개입, 사익추구
- 복지부동, 책임소홀

- 정책결정 불투명
- 정책결정 불공정
- 공익침해, 이권개입
- 고객관리 소홀

※ 부정비리 ⇒ 기관불신 ⇒ 갈등유발 ⇒ 정책실패 (악순환)

※ 국민은 40.9%가 부패 인식

VI. 맺는 말

“두 사람의 머리는 한 사람의 머리보다 낫다”
- 헤이우드



보상은 혼자 결정하면 독단으로 흐를 수 있고, 잘못되면 건잡을 수 없습니다.
보상은 일 하나하나가 전부 돈이기 때문에 한 번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보상부서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오로지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시길 바라며,
논란이 될 만한 일은 부서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하시길 바랍니다.



“NO PAIN, NO GAIN.”

감사합니다.

